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 ①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되며 각 집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에 발간한다.
- 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을 표기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내용) 게재되는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특히 국내외의 다문화, 이주, 소수자 문제에 등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으로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 (게재 원고의 저작권 및 관권)

- ① 학술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전자출판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multi-culture.c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타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다.
- ②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연구소는 편집저작권과 게재된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할 권리 및 전송할 권리를 무상으로 갖는다.
- ③ 저자는 원고 게재가 확정된 이후 저작권 활용 동의서(별첨 1)를 제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국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편집과정을 보조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제6조(개정) 이 규정은 『현대사회와 다문화』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개정)

- ①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편집위원회, 발행, 심사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일부 개정
- ② 저작권 활용 동의서 양식(별첨 1) 신규 삽입

별첨 1

저작권 활용 동의서

논문명:

저자(들)은 위 논문이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게재될 것을 희망하며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위 논문은 저자(들)의 창의적인 연구의 결과물이며 자신의 연구를 포함하여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2. 저자(들)는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저자(들)는 위 논문이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게재될 경우, 판매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 이양합니다.
4. 위 논문을 개인적인 논문집이나 저서의 발행에 포함시킬 경우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교신저자 (주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공동저자4					
공동저자5					

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게재논문의 내용) 게재되는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특히 국내외의 다문화, 이주, 소수자 문제에 등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으로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의 제출)

- ①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게재신청서(별첨 2)와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원고는 파일형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나, 각 집의 원고 마감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 ② 원고에는 제목, 저자 성명, 소속을 기재한다.
- ③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영문 초록은 1,000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 ④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원고의 분량(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한글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연구논문의 경우 A4 20매 내외로 하며 최대 25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서평의 경우 A4 5매 내외로 한다.

제4조(논문게재) 제출된 논문은 심사자 3명의 판정결과 후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게재 가’로 판정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제5조(원고의 형식)

- 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② 원고 양식은 A4 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한다.

제6조(원고의 심사료와 게재료)

- ① 원고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필자는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한다.

제7조(연구윤리) 현대사회와 다문화 학술지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3.2.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향후 2년간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록 규정 강화)

- ① 제3조 ③항 단서 조항에 국·영문 초록의 분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부 칙(2016. 0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면개정) 이 규정은 기존 간행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투고규정을 독립, 전면 개정한 것이다.

부 칙 (2016.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록 규정 강화)

- ① 제3조 ③항 단서 조항에 국·영문 초록의 분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별첨 1

원고작성요령

1. 본문 출전 작성 요령

- ① 참고한 책에 대한 주석은 본문 주로 하며,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사용한다.
- ② 본문 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i. 저술 인용 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예: (최병두 2009: 150)
 - ii. 본문에 저자나 출판연도가 언급되었거나 페이지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예: 최병두(2009)
- ③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 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는 …
- ④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고 가나다순으로 나열한다.
예: (박경태 2008; 설동훈 1999)
- ⑤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최협 외(2004) 또는 Taylor et al.(1994)
- ⑥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머릿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조은(2009; 2010)은…
예: U. Beck(2004)과 E. Beck(2007)의 연구에서…

2. 참고문헌 작성 요령

- ①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 ② 참고문헌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로마자 표기의 구미어, 기타어(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순서로 배치한다. 한국어 문헌의 저자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중국어는 획순으로, 기타 다른 외국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표기를 한다.
- ③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④ 참고문헌에는 진한 글씨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⑤ 참고문헌의 서명, 출판사 등의 사이에는 쉼표를,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 ⑥ 참고문헌은 내어쓰기 한다.
- ⑦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⑧ 따옴표 다음에 쉼표를 찍는 경우 한글은 닫는 따옴표 뒤에, 영문은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⑨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페이지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줄표를 넣는다.
- ⑩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i. 단행본

오경석, 2007, 한국어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Castles, Stephan and Alastair Davidson,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London: Macmillan.

ii. 학술 논문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

Goodkind, Daniel, 1997, The vietnamese double marriage squeez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1), 108-127.

iii. 번역서

Martiniello, Marco,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옮김, 2002, 한울.

iv. 출판 예정 논문 및 서적

출판 예정인 논문이나 서적은 출판 연도 대신 간행 예정이라고 표기한다.

v. 학술대회 발표문

김혜순, 2009, 정부주도 다문화의 명암: 시혜적 ‘다문화’, 요원한 ‘다문화사회’,
2009년 한국사회학대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11-625.

vi. 인터넷 자료

(사)국경없는마을, 2006,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리플릿, <http://www.bvillage.org>.

vii. 신문기사·잡지

한겨레, 2010.08.24, 대구이주노동자 57% 최저임금도 못받아.

New York Times, 1993.06.23, The battered woman.

3. 표, 그림, 사례 작성 요령

- ① 표 제목은 표의 위쪽에,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에 넣고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붙여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자료:”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② 면접사례 등을 인용할 경우 “사례”라는 글자와 사례 번호를 괄호 안에 넣는다. 이때 “사례”라는 글자와 번호 사이는 한 칸 띄어 쓰고, 마침표는 괄호 바깥에 찍는다. 인용문 및 사례 번호 등은 모두 본문과 같은 글씨체로 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9로 한다.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특집원고 등의 심사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학술지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이어야 한다.

② 기획특집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①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의 시의적절성
 2. 연구 관점의 독창성과 연구원의 특성화와의 적합성
 3.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및 일관성
 4. 전체평가의견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 ②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절차)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익명의 심사자 3명이 맡는다. 단, 편집위원이 원고를 제출한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익명의 심사자 3명이 맡는다.
- ③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을 원칙상 배제한다.
- ④ 원고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⑤ 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 또는 당해 논문제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심사위원은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으로 심사한 사유 및 수정 지시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3. 전면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 ③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다를 경우 심사논문 판정기준(별첨 1)을 따른다. 보고서를 수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⑥ “게재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⑦ “전면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⑧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마감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수정)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

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수정한다.

제7조(연구윤리)

- ①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 ②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심사를 통하여 이미 출간된 후 1, 2항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제8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9조(심사료)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면개정) 이 규정은 기존 간행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심사규정을 독립, 전면 개정한 것이다.

부 칙 (2016.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 수정)

- ① 제4조 ③항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을 원칙상 배제한다.”를 추가하고, 기존의 ③, ④, ⑤항은 각각 ④, ⑤, ⑥항으로 한다.

별첨 1

심사논문 판정기준표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심사평가
계재 가	계재 가	계재 가	계재 가
계재 가	계재 가	수정후 계재	
계재 가	계재 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계재	수정후 계재	계재 가	수정후 계재
수정후 계재	수정후 계재	수정후 계재	
수정후 계재	수정후 계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계재	계재 가	수정후 재심사	
계재 가	계재 가	계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계재 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계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계재 가	계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계재	계재 불가	
수정후 계재	계재 가	계재 불가	
수정후 계재	수정후 계재	계재 불가	
계재 불가	계재 불가	계재 불가	
계재 불가	계재 불가	계재 가	계재 불가
계재 불가	계재 불가	수정후 계재	
계재 불가	계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계재 불가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기고하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연구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양식 1)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 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 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연구업적의 표기)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 ③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7조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학술지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3.2.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향후 2016년 3월 이후부터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향후 2년간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 2명, 편집위원 2명, 그리고 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계의 원로 중에 위촉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11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①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윤리위원회는 제11조에서 정한 심의와 제13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윤리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면개정) 이 규정은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세분화, 강화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양식 1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논문제목		
연구자 1	성명	(서명)
	소속	
연구자 2	성명	(서명)
	소속	
연구자 3	성명	(서명)
	소속	
연구자 4	성명	(서명)
	소속	

필자(들)은 위의 논문을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투고하면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현대사회와 다문화』 편집위원회 귀중

현대사회와 다문화 ● 2018년 제8권 1호

발행일 2018년 6월 30일
 역은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출판인 김연희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주)푸른길
 출판등록 1996년 4월 12일 제16-1292호
 주소 (083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008호
 전화 02-523-2907, 02-6942-9570~2
 팩스 02-523-2951
 홈페이지 www.purungil.co.kr

ISSN 2234-1013

※ 본 간행물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앞쪽의 『현대사회와 다문화』 구매 신청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